



# “세입자 환급”- 재산세 환급

## The Renter’s Refund” Property Tax Refund

### 임차인 환급(재산세 환급)이란 무엇인가?

많은 임차인과 주택소유주는 매년 미네소타 주로 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환급액은 임대 기간이나 당신의 재산세, 소득, 그리고 부양 가족의 수에 의해 결정 됩니다.

### 환급 대상자는?

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.

- 임차인 이고 2018 년 총 가계소득이 \$61,320 이하인 자(소득액은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서 인상 됨)
- 또는
- 주택 소유자이면서 2018 년 총 가계 소득이 \$113,150 이하인 자(소득액은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서 인상 됨) 그리고
- 타인의 2018 년 연방세 환급에 종속 되어 있지 않는 자, 그리고
- 2018 년 미네소타 주에 1 년 또는 부분 거주자, 그리고
- 과세 대상의 건물의 임차인이거나 주택 소유주



**참고:** 주택 소유자 인 경우, 재산세 환급을 받으려면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함.

### 환급 받는 방법?

- 임차인의 경우, 임대인이 2019 년 1 월 31 일 까지 임대료 납부 증명서 (CRP)를 임차인에게 발행 할 의무를 가진다. 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세 명세서를 사용한다.
- 2018 Form M-1PR, Homestead Credit Refund (for 주택소유자) and Renter Property Tax Refund 라는 양식을 이용한다. 도서관 또는 (651) 296-3781 로 전화하거나, : MN Tax Forms, Mail Station 1421, St. Paul, MN 55146-1421 편지하면 위의 형식을 얻을 수 있다.

또한 모든 양식 및 정보는 [www.taxes.state.mn.us](http://www.taxes.state.mn.us) 에서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다.

- 일반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, 양식을 작성하고 CRP 를 첨부하여 (임차인의 경우)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여 보낸다. 마감기한은 2019 년 8 월 15 일이다. 주소 :  
**Minnesota Property Tax Refund**  
**St. Paul, MN 55145-0020.**
- 2019 년 8 월 15 일 이후 90 일 내에 환급을 받을 것이다.
- 전자적으로 신청하고 아래와 경우에 최대 30 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:
  - 주택 소유자인 경우, 4 월 30 일 까지, 임차인이거나 이동 주택 소유자인 경우 7 월 31 일 까지 서류를 제출한 경우
  - 계좌 입금의 경우. 즉 환급액이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됨.
  - 작년에 M1PR 을 신청한 경우
  - 임차인인 경우 집주인으로 부터 CRP 를 받은 경우

최대 1 년 까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. 2018 년 환급을 청구하려면 2020 년 8 월 14 일 까지 신청해야 한다.

### 임대인으로 부터 CPR 을 받지 못한 경우?

- 우선,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CPR 을 요청한다. 그래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시, CRP 을 요구하는 내용과 제공되지 않은 CRP 당 \$100 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. 2018 년에 지불한 집세의 금액을 진술하고 편지의 사본을 보관한다.
- 집주인이 여전히 CRP 를 제공 하지 않을 경우, Department of Revenue at (651) 296-3781 로 연락한다. 집주인이 여전히 CRP 를 제공하지 않으면 Department of Revenue 에게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라고 요청한다.
- Department of Revenue 는 CRP 대신에 Rent Paid Affidavit 를 줄 수 있다. 지불한 집세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. 영수증이 없는 경우, 임대, 우편 또는 거주 사실과 임대료를 지불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이용할 수 있다. 거주 사실과 지불한 임대료를 증명 할 수 있다면, 주 정부는 임대료가 지불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.



### 세금 서식에 대해 도움 받을 곳은?

저소득층,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라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Department of Revenue: (651) 297-3724 또는 2-1-1 (United Way) 주 전역. 로 전화하면 가까운 도움 처를 찾을 수 있다.

**자료서는 법률 정보일 뿐, 법률적 조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.**

본 자료서는 1 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. 업데이트 사항, 자료서 목록, 또는 다른 형식의 포맷에 대해서는 본 기관으로 요청해 주십시오.

© 2019 Minnesota Legal Services Coalition. This document may be reproduced and used for non-commercial personal and educational purposes only. All other rights reserved. This notice must stay remain on all copies. Reproduction, distribution, and use for commercial purposes are strictly prohibited.